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인공지능, 고영향 인공지능, 생성형 인공지능,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.
-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,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, 인공지능 활용 촉진,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·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, 인공지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음(안 제11조 및 제12조)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·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

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음(안 제23조).

-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성·신뢰성, 접근성,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제정·공표할 수 있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·교육하여야 함(안 제27조).
-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,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,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함(안 제31조).
-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식별·평가·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(안 제32조).
-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·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(안 제34조).

Ⅱ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안 제6조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, 안 제7조는 인공지능 발전과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회의의 의사·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, 안 제17조의 경우 인용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, 부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Ⅲ. 관계기관 의견

-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4조에 대하여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4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인공지능은 전 부처가 관련되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, ‘인공지능표준화’가 기업·국민에 폭넓은 지원과 각 산업 영역으로의 ‘인공지능확산을 위한 진흥수단’이 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해당 부처들 즉 ‘정부’가 표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.

개 정 안	합 의 안
제14조(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,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, 인공지능의 안전성·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, 한국산업표준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14조(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)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,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, 인공지능의 안전성·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삭 제>
1.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	1.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
2.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	2.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

개 정 안	합 의 안
조사·연구개발 3.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 ③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④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·강화하여야 한다. ⑤ 그 밖에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조사·연구개발 3.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<u>정부는</u>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 ③ <u>정부는</u>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④ <u>정부는</u>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·강화하여야 한다. ⑤ 그 밖에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**문화체육관광부**는 안 제5조제2항에 대하여 개별 법률의 목적상 각각 지향하는 바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의 목적에만 부합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, 저작권에 관하여는 「저작권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, 안 제31조제3항 후단에 대하여는 ‘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’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‘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 따른 문화상품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, 국내 인공지능 개발사업자가 EU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학습데이터로

이용되는 데이터의 목록 공개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(생략)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>	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(제정안과 같음) <삭제> ② 저작권에 관하여는 「저작권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1조(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) ①·② (생략)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,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·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. <신설>	제31조(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)①· ② (제정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「문화산업진흥 기본 법」 제2조의 문화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----- ----- . 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개 정 안	수정의견
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, 제2항에 따른 표시,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, 제2항에 따른 표시,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, 제4항에 따른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 다음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문을 송부하였음.

1. 인공지능 기술 개발·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정보주체가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,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
2. 인공지능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을 적정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규제 수준을 달리할 것
3.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,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, 인권침해·차별 예방 조치 등을 사전에 점검할 것
4.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후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‘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’을 삭제할 것
5. 인공지능 개발·출시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기능 등 변경 시 재평가를 하도록 할 것

6. 인공지능 위험 요소 점검 및 감독,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및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등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것

(전문위원 박 동 찬)